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1102		
최초 등록일	2021. 04. 26	최종 등록일	2023. 11. 27

대만식 도시락 TWBD

타이완벤땅

타이완벤땅 (TWBD)

정보공개서

[타이완벤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시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엠에이치에프홀딩스

대표번호	1 6 6 0 - 0 3 6 9	팩스번호	0 2 - 5 7 9 - 8 3 1 5
가맹사업부서	가맹사업팀	전화번호	(비 공 개)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7 길 6, 2 층 (개포동)		
전자메일	ahtkdjs@naver.com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의 연혁
3. 가맹사업의 업종
4.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10.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기간,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등
4. 신용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http://franchise.ftc.go.kr>)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거래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가맹사업(주)엠에이치에프홀딩스의 '타이완벤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당사와 '타이완벤땅'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주)엠에이치에프홀딩스	법인설립등기일	2020. 9. 23
사업자등록일	2020. 10. 08	대표자	모충정
법인등록번호	110111-7605376	사업자등록번호	122-88-01888
대표전화번호	1660-0369	대표팩스번호	02)579-831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7 길 6, 2 층(개포동)		
영업표지	타이완벤땅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소		
대표이사	모충정	(주)엠에이치에프홀딩스	타이완벤땅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7 길 6, 2 층(개포동)		
사내이사	모시운					
사내이사	모채운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감사	모수량			모충정	1660-0369	02)579-8315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 제 11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서 직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사실은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가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명칭(영업표지)	상호	서비스표, BI 등
타이완벤땅 (TWBD)	타이완벤땅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대만식 도시락 TWBD 
		상표등록번호 : 40-1700169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년	146,343	135,077	11,266	342,147	-44,196	-77,247
2022 년	181,260	92,746	88,514	452,949	27,856	87,888
2021 년	34,487	33,861	625	167,772	-3,192	-3,137

그 근거자료는 별첨 1 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타이완벤땅' 가맹사업 외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 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모충정	대표이사	2020.10~현재	'타이완벤땅' 가맹사업	경영전반

관련 임원	모수량	감사	2020.10~현재	'타이완벤땅' 가맹사업	감사
	모시운	사내이사	2020.10~현재		
	모채운	사내이사	2020.10~현재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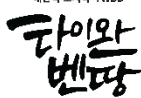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12.31	3	1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타이완벤땅'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은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타이완벤땅'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건본이미지	출원/등록일자	출원/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타이완 벤땅	대만식 도시락 TWBD 	2020. 01. 21	40-2020-0011136	모수량	2031. 03. 05
		2021. 03. 05	40-1700169		
권리 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 당사는 상표권자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타이완벤땅'을 시작한 날: 2022 년 9 월 21 일 (직영점을 시작한날 2021 년 4 월 1 일)

2. '타이완벤땅'의 연혁

'타이완벤땅'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엠에이치에프홀딩스	타이완벤땅	모충정	2022. 09. 21 ~ 현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7 길 6, 2 층

3. '타이완벤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타이완벤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도시락

4.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타이완벤땅'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최근 3 개 사업연도에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직영점
	전체	가맹점	전체	가맹점	전체	가맹점	전체	가맹점	
전체	1	-	1	3	2	1	2	1	1
서울	1	-	1	3	2	1	2	1	1
인천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세종	-	-	-	-	-	-	-	-	-

5.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타이완벤땅’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3 년	2	-	-	1	1	1
2022 년	-	2	-	-	-	2
2021 년	-	-	-	-	-	-

6. ‘타이완벤땅’ 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타이완벤땅’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지역	2023 년 말 가맹점수	2023년 연간 매출액(단위: 원, VAT미포함)						비고
		평균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1	해당 없음	산정 불가
서울	1	해당 없음	5 곳 미만
인천	-	해당 없음	-
부산	-	해당 없음	-
대구	-	해당 없음	-
광주	-	해당 없음	-
대전	-	해당 없음	-
울산	-	해당 없음	-
경기	-	해당 없음	-
강원	-	해당 없음	-
충북	-	해당 없음	-
충남	-	해당 없음	-
전북	-	해당 없음	-
전남	-	해당 없음	-
경북	-	해당 없음	-
경남	-	해당 없음	-
제주	-	해당 없음	-
세종	-	해당 없음	-

☞ 당사는 특정 가맹점의 매출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점을 우려하여 매출액 산정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8. '타이완벤땅'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타이완벤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년	1	375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현황

'타이완벤땅'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타이완벤땅'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2023 연중	24,073	24,073	-
광고	(비공개)	-	24,073	24,073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지점	주 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양재중앙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1	02-589-1900

☞상기 예치기관의 예치서류 및 절차는 예치기관의 정책 및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예치 전 반드시 당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www.wooribank.com)접속 → ③ (전체서비스)클릭 → ④ (우리예스크로)클릭 → ⑤ (MY예스크로)클릭 → ⑥ (가맹금예치신청)클릭→ ⑦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우리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개인인감 증명서 ⑤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우리은행에서는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를 매장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은행 계좌가 있으신 사업자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라.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별도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타이완벤땅'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u>33,000,000</u>	계약체결시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영업표지 및 노하 우 사용을 위한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교육인원 추가 시)	<u>3,300,000</u> <u>(2 인기준)</u>	교육시작 7 일 이전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 되는 소멸성 비용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	----------------

양수 가맹비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가맹점 운영매뉴얼 제공	-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교육인원 추가 시)	<u>2,200,000</u>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 요되는 소멸성 비용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u>5,000,000</u>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합 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u>41,300,000</u>	<u>23,700,000</u>
가맹비	<u>33,000,000</u>	<u>16,500,000</u>
교육비	<u>3,300,000</u>	<u>2,200,000</u>
보증금(VAT 해당없음)	<u>5,000,000</u>	<u>5,000,000</u>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타이완벤땅'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99m² 기준/단위:원/VAT 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V-1 의 거래상대방	82,500,000	2,750,000	계약 시 개별 협의	설치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간판 및 사인물		22,000,000	해당 없음		설치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주방기기 및 집기		20,000,000	해당 없음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POS		1,100,000	해당 없음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초도물품		10,000,000	해당 없음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합 계		135,600,000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당 330,000 (VAT포함)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인테리어 비용은 99m² 기준이며,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3.3m² 당 2,750,000 원을 추가로 부담하며, 초도물품에 각종 주류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상기 간판 및 사인물 비용은 간판의 크기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④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개점 전 교육과정 이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각 품목의 공급방법은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아.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원/VAT 포함)		지급시기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예치 가맹금(계약금)	41,300,000(일시불)	23,700,000 (일시불)	계약 체결 시

☞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	----	--------	----------------------------	-------	----------------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본부	₩550,000(월)	매월 10 일	후불제로 반환 대상 아님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 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 교육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시스템사용료	가맹본부	설치 설비 규모에 따라 상이		후불로 반환 안됨
점포 개선비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 개선 비용	가맹본부	총 개선비용은 협의하여 결정(당사가 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 개선 비용.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고)	개별 청구	실비로 점포개선 후 반환 되지 않음

☞ 귀하는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에게 미지급 금액의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3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요구,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

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 등'이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타이완벤땅'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타이완벤땅'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귀하가 '타이완벤땅'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① 귀하가 위 표에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②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③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④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	-	-	-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2023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이익

귀하가 '타이완벤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타이완벤땅’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그에 대한 **알선의 대가는 없습니다.**

나. 당사는 ‘타이완벤땅’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강제)하는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타이완벤땅’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당사가 제공한 레시피에 의하여 조리된 메뉴 품목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 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 별로	1 회 위반: 구두 경고	가맹사업법의

타 가맹점	전 품목	기재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2 회 위반: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해지 절차 준 용
경쟁업체	전 품목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이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매장에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직영점과 동일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메뉴제공)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도시락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가맹본부	계열회사 등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타이완벤땅	해당 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의 기준점(가맹점의 중앙점) 으로부터 반경 1KM (다만,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지도별첨)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타이완벤땅' 영업

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타이완벤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나.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53%	47%	-	-

당사의 2022년 가맹점 매출액 확인이 어려워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의 산정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다.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의 기간,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타이완벤땅’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입니다. 갱신 시에는 **1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갱신비용이 없는 경우는 제외)	7조 2항 각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항 및 3항	25조 각호 및 31조 1항 1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 1항 및 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조 2항 ~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 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 9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7조 2항	

	및 3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 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조 2항 ~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조 7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 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조 21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 1항 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조 3,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 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 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 준용	교육수료 및 교육비용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타이완벤땅’과 동종업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이완벤땅’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육류 및 해산물을 주재료로 하는 도시락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소요) → 허가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타이완벤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권장영업시간	영업일수
가맹점 개별 상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운영 (고객의 편의 및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하여 일관성 있는 영업시간을 유지할 것)	오전 11:00 ~ 오후 15:00 오후 15:00 ~ 17:00(휴게) 오후 17:00 ~ 오후 21:00	연중 무휴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2명	직접 근무 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권장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 / 가 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 →가맹점부담 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지 받은 날 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등			

☞ 브랜드 및 상품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금)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등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 제 18 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금)로 금삼천만원(30,000,000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금)로 금삼천만원 (30,000,000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금)로 일천만원(10,000,000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금)로 1 일 금일백만원 (1,000,000 원) 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항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금)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5항
당사 또는 당사에 소속된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제6항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귀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귀하의 영업기간 동안 당사에게 지불한 직전 3 개월간 월평균 물품대금의 5% 금액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을 위약벌(금)로 지불하며 이는 제 33 조의 위약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제7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 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7조 제1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를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 일 내외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관련 페이지 참조 (P.9~P.15)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방문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설명 · 상담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제공	필요 시 실시	
최종협의	- 개설승인 - 계약서 제공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가맹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 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 일)	
실내 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D-24 ~ 5(20 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실시	D-7 ~ 4(3 일)	
점포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개설 예정 점포의 내/외부 및 기타 인프라(전기, 수도, 배선 등)현황, 인테리어 공사 중 대외변수로 인한 공기지연, 고객 혹은 건물주 등의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 기타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동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상호간에 노력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g.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타이완벤땅’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의 부담 항목	가맹본부의 부담 비율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기타비용은 협의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타이완벤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귀하가 '타이완벤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 (25시간)	3,300,000 (기본: 2명, 추가 1인당 1,100,0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2.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3.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계약서 제 16 조에 따라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1년 2 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98,110	POS 매출액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의 가맹사업팀 (02-6498-388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할 있습니다.

#별지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별지2 가맹본부 물품 요구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 상기 품목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의 사업전략 변경 등으로 인한 메뉴변경 및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의 물류배송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되거나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엠에이치에프홀딩스』의 『타이완벤땅』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아래사항을 보고 동일하게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주)엠에이치에프홀딩스』의 『타이완벤땅』 가맹계약에 앞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정보공개서 제공일시:		
	정보공개서 제공장소:		
	정보공개서 제공자:		

	정 보 공 개 서 수 령 자 :		
	수령자 주소:		
	전화/휴대폰: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가맹점사업자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엠에이치에프홀딩스』의 『타이완벤땅』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아래사항을 보고 동일하게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주)엠에이치에프홀딩스』의 『타이완벤땅』 가맹계약에 앞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정보공개서 제공일시:		
	정보공개서 제공장소:		
	정보공개서 제공자:		

	정 보 공 개 서 수 령 자 :		
	수령자 주소:		
	전화/휴대폰: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 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분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정히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자필 :

제공일자 년 월 일

수령자 성명: 수령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회사명 사명: 회사 서명(또는 기명날인)